

2003. 7. 14 (월) 10:00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 레 심사결과보고

産業建設委員會
(위원장 정종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 종 기 의원입니다.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계획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으로 같음하고,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했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에서

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해 군 전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조례 미제정으로 인한 군민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는 등 국토이용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10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균형 발전과 사유재산의 권리 제한 정도의 적정 여부 등 군정발전과 군민권의 보호 등 조례 제정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자 심사를 보류해 놓고,

2003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 소속의원,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전직 군의원, 지역주민 등 17명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가진 후 그 내용을 토대로 2003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 소속의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수정안 요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과 조문은 삭제하였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조문에는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20% 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60%에서 80%로 조정하고 종전 준농림 지역인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될 때까지 개발행위 면적을 1만5천제곱미터로 한정하는 한편,

동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은 1만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만 허용토록 했으며,

또,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만 허용토록 하는 반면,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종전 조례보다 10% 포인트 상향하여 5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안보다 많이 추가하여 허용 범위를 확대했고,

또, 허용된 시설이라도 도로의 너비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기준 등으로 행위 제한된 부분을 삭제하여 완화했습니다.

특히, 종전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벗어날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수정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